



1. 상호변경,용량변경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대상 여부

-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에 상호변경 또는 전기설비용량이 변경된 경우, 선·해임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 전기수용설비용량이 5,000kW미만인 사업장에 종전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원에 대한 해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선임된 것으로 보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Question

Answer

- ◎ 전기사업법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한국전력기술인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전기설비용량의 변경등으로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일지라도 해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전기안전관리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므로, 동법 제73조의4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및 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1. 26)

2. 시공사 및 감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소속직원(시공사 직원 또는 감리업체 감리원)을 일정기간(사용전검사 신청전부터 건물을 준공하여 인수·인계할 때까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Question

Answer

- ◎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는 목적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공사”라 함은 전기설비의 설치·변경·개조·보수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전기를 사용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
 - “유지”라 함은 개개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손질·순시·점검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운용”이라 함은 전기설비의 설치목적에 따라 조작·가동·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유지와 운용은 동시에 행하여지고 공사는 이에 앞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중요성에 있어서 그 중의 어느 것 하나도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 ◎ 건물이 준공되기 전의 공사에서는 전력시설물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자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있으며,
- ◎ 전기안전관리자는 설계·시공·감리 등의 모든 공사가 끝난 후에 유지 및 운용에 관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 ◎ 시행사(소유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 또는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감리업자는 점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시공사의 소속직원이나 감리업체 소속감리원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7. 16)



3.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 대행규모 차등적용에 대하여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의 대행규모에 대하여
-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와의 대행용량 및 가중치 차등적용에 대하여

Question

Answer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의 대행규모는

- 대행사업자 : 용량 1,0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미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 용량의 합계가 1,500kW미만
- 개인대행자 : 용량 5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300kW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800kW미만

◎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의 용량 및 가중치 차등적용에 대하여는

- 전기설비의 규모에 따라 1인의 전기안전관리자가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의 개소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제한되어 있으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별표13]에 의거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의 가중치 합계점수는 60점 이하로 똑같이 적용되나 설비용량별 가중치는 다릅니다.

구 분		개 소	가중치	점 수
대행사업자	최소	5	12	60
	최대	85	0.7	59.5
개인대행자	최소	8	7.5	60
	최대	60	1	60

- 개인대행자와 대행사업자의 대행할 수 있는 용량의 범위가 다른 것은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기술인력·장비에 대한 자격요건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으로, 개인대행자는 대행사업자에 비해 자본금, 안전관리보조원, 공용장비에 대한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 3. 11)

4. 전기공사업과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겸업에 대하여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겸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법인대표이면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 지

Question

Answer

◎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소속 기술인력은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이 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대행개소, 가중치 및 점검횟수) 안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이행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동일법인의 전기공사업체 대표자로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의 대표자 겸직은 가능하나 전기안전관리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10. 18)